

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755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19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김동욱 의원(찬성자 27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5년 6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동욱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한 핵심 공간임.
-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,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전용구역의 기능이 저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, 긴급차량 출동 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함. (안 제2조제4호)
- 2) 시장의 책무 및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·시행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함. (안 제3조 및 제4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‘소방차 전용구역’을 조례상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소방차 통행과 현장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[표 1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.)</p> <p><b>4. “소방차 전용구역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b>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,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현황 및 실태조사</p> <p>2.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</p> <p>3.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그 밖에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-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 ----- -----</p>

## 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운영 현황

- 소방차 전용구역은 「소방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21조의2<sup>1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12<sup>2)</sup>에 따라,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정 구역<sup>3)</sup>임.
- 그리고,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

### 1)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)

①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 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(이하 “전용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·방법,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의1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)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(棟)으로 구성되고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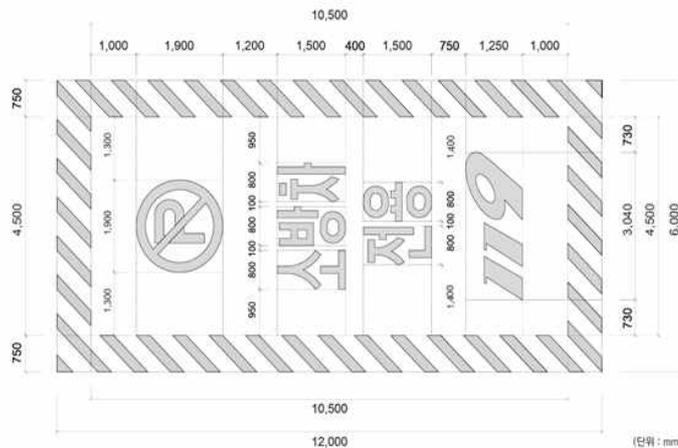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

3)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의13(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·방법)

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(이하 “전용구역”이라 한다)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.



< 소방기본법 시행령 [별표 2의5]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 표기 방식>

진입 또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1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회 50만원, 2회 100만원, 3회 이상 100만원)가 부과<sup>4)</sup>되고 있음.

- 다만,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의무는 2018년 2월 9일 법 개정 당시 부칙에 적용례가 명시<sup>5)</sup>되면서 법 시행일인 2018년 8월 10일 이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는 총 53개소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·운영 중이며(〔표 2〕 참조),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, 물건 적치 등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4) 「소방기본법」 제56조(과태료)

①~② (생략)

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〔별표 3〕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(소방기본법 시행령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마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3항	50	100	100

5) 「소방기본법」 부칙<법률 제15365호, 2018.2.9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2,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**[표 2] 서울시 소방차 전용구역 현황(25.5.기준)**

(단위 : 개소)

구분	계	종로	중구	광진	용산	동대문	영등포	성북	은평	강남	서초	강서	강동	마포	도봉	구로	노원	관악	송파	양천	중랑	동작	서대문	강북	성동	금천
계	53	1	0	5	1	1	5	1	3	1	2	8	6	0	1	2	1	1	5	0	4	1	0	0	0	4

※ 아파트가 단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동마다 설치해야 하며, 본 표에서는 단지를 하나로 간주하여 주소지별로 1개로 기재하였음.

- 최근 3년간 단속 현황([표 3] 참조)을 보면 2022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으나 2023년 2건, 2024년에는 2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,

**[표 3] 최근 3년간('22~'24)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단속 현황(단위 : 건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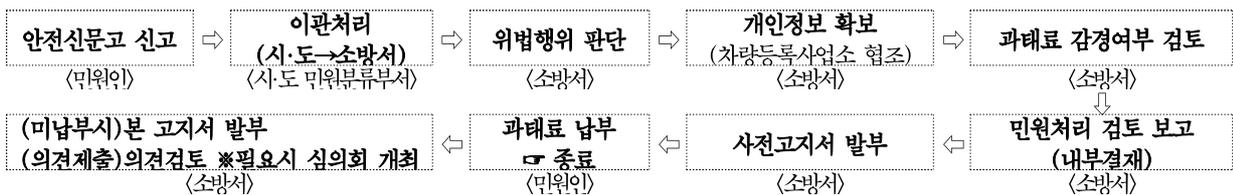
합 계('22.~'24.)	2024년	2023년	2022년
22	20	2	0

- 이는 2022년부터 '안전신문고'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<sup>6)</sup>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동해서 확인해야 했던 단속 구조보다 단속 실효성이 크게 향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.

6) 「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」 신고앱 운영계획

□ 운영 개요

- (운영일자) '22. 6. 2.(목). 09:00 ~ ※ 운영일자는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
- (주요내용) 행안부 '안전신문고\* 앱'에 신고메뉴 추가  
\*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
- (신고방법)
  - 배경이 동일한 위치(방향)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첨부
  - 위반지역\*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 
\* 소방차 전용구역 위치(0동과 0동 사이 등), 전용구역 노면표시(황색실선)
- (처리절차)



-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단속 권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시민이 위반행위를 신고 하더라도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은 소방에서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7)가 존재함.
- 한편,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용구역 상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제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.([그림] 참조)



[그림] 소방차 전용구역 홍보 및 단속 등 제도

■ 소방차 전용구역 추가에 대한 의견(안 제2조제4호, 안 제3조, 안 제4조)

- 본 개정조례안은,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관리 대상에 법 제21조의2에

7)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의 한계

- (처리과정) 불법주·정차 차량 등 발견 → '안전신문고 앱' 활용 신고 → 지자체 민원총괄부서 접수 → 관할소방서 지정 → 법률 적용 대상 확인 → 과태료 부과·징수
- (처리방법) 신고요건 충족 결과에 따라 수용·일부수용·불수용 중 선택
  - ㉠ (수 용) 과태료부과
  - ㉡ (일부수용) 과태료 미부과 ※ 필요시 위반행위자 제도 처리
    - 신고인 : 일부수용 사유 결과 회신(단속 요건에는 충족되나, 법률 미적용 되는 단지로 과태료는 미부과)
    - 행위자 : 반복적인 위반행위자 등 제도 필요시 우선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
  - ㉢ (불 수 용) 과태료 미부과, 위반행위자 제도 미필요(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속 요건이 아닌 경우(번호판 식별 불가), 위반행위자 파악이 힘들어 과태료 부과 발송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)
- 2025.4월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(출처 :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) (단위 : 단지, 동, 세대수)

구분	단지수	동수	호수
공동주택	3,101	19,492	1,713,580

따른 ‘소방차 전용구역’을 명시하려는 것으로,

- 안 제2조제4호에 ‘소방차 전용구역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이라 정의하고,
-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, 안 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등 관련 조문에 기존의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”을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”으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” 이외에 “전용구역”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- 특히,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53개소를 중심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, 주민 대상 홍보·계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짐.
- 다만,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활동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 설치 유도와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5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영철,  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원형, 이은림, 이종태,  
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한 핵심 공간임
-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,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전용구역의 기능이 저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,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함 (안 제2조제4호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시행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소방차 전용구역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”을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”을 각각 “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소방차 전용구역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,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의 현황 및 실태조사</p> <p>2. 소방차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</u></p>	<p>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----- 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전용구역</u>-----</p> <p>2. ---- <u>진입불가·곤란지역·</u></p>

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 
관한 사항

3. 소방차 진입불가·곤란지역  
의 관리에 관한 사항

4. (생략)

5.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·  
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  
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  
고 인정하는 사항

전용구역-----  
-----

3. ---- 진입불가·곤란지역·  
전용구역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진입불가·  
곤란지역·전용구역-----  
-----  
-----

#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소방차 전용구역”의 정의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계분석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